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11. 7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11월 23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12월 7일
(제155회정기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부교육감 곽창신)

가. 제안이유

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대통령령 제15916호) 과 동규정시행규칙 (교육부령 제725호) 이 98.10.16자로 제정·공포되고,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도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,828명으로 함 (안 제2조)

○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,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3조)

○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함 (안 부칙 제2조)

<정원조정 내용 (안 제2조)>

구 분	현 재	조 정	증 감
계	3,130	2,828	△302
교육위원회 의사국	15	13	△2
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	3,115	2,815	△300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문기)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이 98.10.16자로 제정·공포되고,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도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3,130명에서 302명을 감축하여 2,828명으로 하고

○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 부 서 류

가.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